

의안번호	제2779호
의결 연월일	2024. 5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##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허옥희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4. 5. .

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허옥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7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5. .

발 의 자: 허옥희, 김석한, 이쌍자,  
최두임, 김희태, 이정숙  
의원(6인)

### 1. 개정이유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2023. 8. 16. 공포, 2024. 2. 17. 시행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제3항)
- 나.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제출 (안 제7조제2항)
- 다.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보정을 통지하고,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수정 (안 제11조)
- 라.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 (안 제11조의2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4항,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5호
  -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 10(금) ~ 2024. 5. 15.(수)
  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: 의견없음

#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청구인의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.
-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
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·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청구의 철회)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·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별지 제7호, 별지 제8호,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7호서식] **[신 설]**

##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청구조례명	조례의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	
변경 전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(거소·체류지) (전화번호 : )	
변경 후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(거소·체류지) (전화번호 : )	
변경사유		

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변경 전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변경 후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고성군의회의장

귀하

유의사항

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
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 · 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청구인의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7조(청구인명부)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7조(청구인명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<u>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.</u></p>
<p>제11조(보정기간) <u>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1조(보정기간) ① <u>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.</u> ② <u>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</u></p>

<신 설>

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·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1조의2(청구의 철회)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·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## 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

제9조(청구인명부의 작성 등)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,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. 다만,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.

1. 성명
2. 생년월일
3. 주소 또는 체류지
4. 서명 연월일

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.

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·면·동별로 작성하고, 시·도의 경우에는 시·군·자치구별로 읍·면·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0조(청구인명부의 제출 등)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(전자서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·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,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(이의신청 등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
2.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
3.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
4.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
5.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
6.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
7. 강요·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

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·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,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,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.

1. 시·도: 15일 이상

2. 시·군 및 자치구: 10일 이상

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,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”은 “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”으로 본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